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80

발의연월일: 2020. 9. 15.

발 의 자:권인숙·송영길·유정주

장혜영・임오경・허 영

유미향 • 김영배 • 윤후덕

진선미 • 아주진비) • 이수진

이탄희 • 신동근 • 김진애

심상정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직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경우 이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신고 시 이를 은폐·축소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주요내용

- 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제5조의4 신설).
- 나.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국가기관등의 장과 종사자의 성폭력사건 은폐·축소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단체의 장"을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 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할 때 그 사실을 축 소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 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 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 이라 한다)-----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 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① (생 략) ② ~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 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제9조(신고의무) (생략)

<신 설>

<u>하고,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u> <u>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u> 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신고의무)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성폭력 사건 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제3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1. (생략)
- 2. (생략)
- ③ (생 략)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신고할 때 그 사실을 축소 하거나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2) -----
- -----.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실을 출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